근로자재해공제 업무 시행 안내

보험시장의 변화에 부응하고, 조합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 1월 2일부터 신규사업으로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사업에서는 조합원사의 근로자가 산재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합은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다 약10% 절감된 보험료로 근로자재해공제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조합 지점(영업소) 및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기존 인터넷보증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근로자재해공제 보험증권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시 행 일 : 2008. 1. 2부터 계속 ~

2. 가입대상: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3. 가입범위: 건설관련 각종 공사(설치포함), 기계기구제작, 제조업, 서비스업 등

4. 보상내용: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 방어비용(소송비용. 협력비용)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 사 장

1. 근로자재해공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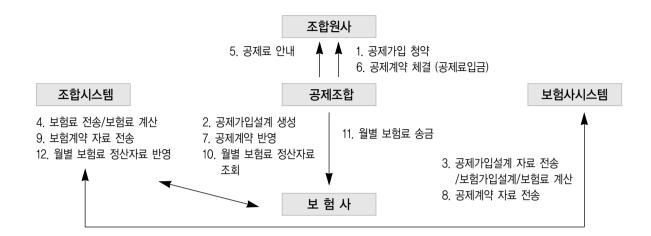
가. 도입배경 및 근거

- ○금융 및 보험시장의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조합은 보증·융자에 국한된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조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보험기법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 ○근로자재해공제사업 도입근거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 사업이 가능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1항제5호
 - 조합 정관 제47조 제1항

나. 정의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일용직포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공제상품입니다.

※대표이사(임원)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됨.



다. 운영구조

○우리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품안내와 근재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손해사정 및 보상처리는 업무제휴(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주간사인 동부화재에서 수행함.

라. 조합원의 혜택

-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보다 약 10% 절감된 보험료로 제공합니다.
- ○일원화된 조합 서비스(보증, 근재보험, 융자, 신용평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공으로 조합원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마. 가입대상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 발급범위

- O조합원이 영위하는 업종 중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 -건설관련 공사(설치포함), 기계기구제작,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두 포함됩니다.

사. 공제계약

- (1) 계약의 종류
- ○공사장별 계약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공사계약, 구간계약, 개별계약이라고도 함.
- ○연간포괄 계약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포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기간계약이라고도 함.

(2) 공제기간

- ○공사장별 계약
- 당해 사업장 건설공사(납품,제조,제작)등에 있어 공사(납품, 제조, 제작)기간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청약한 기간을 공제기간으로 함.
- ○연간포괄 계약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이 이와 다르게 청약한 경우에는 공제기간으로 함.
- ※공제기간은 청약일 이후에 개시됨을 원칙으로 함. 단, 착공일이 청약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이내인 경우는 무사고확인 원을 징구하고 공제기간 개시일을 착공일로 소급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 경과후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음.
- (3) 공제가입 보상한도액
 - -1인 당:1천만원~5억원이내
 - -1사고당: 1천만원~10억원 이내
 - : 공제가입 한도액 이내에서 조합원이 청약한 금액으로 함. 단, 공제가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가입할 경우 보험사의 인수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보상한도액은 공제기간 중에 사고횟수와 관계없이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이 적용됨.

아. 공제료 구조

공제료 = 인건비 × 기본요율 × 보상한도인상계수 × 조정계수

- (1) 인건비: 공제료 산정의 기초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상여금 등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금품)을 말하며, 주로 사업체의 연간노무비 또는 공사장별 노무비등을 말한다.
- ○공사장별 계약
- : 해당공사의 총 예정 인건비로 현장직만 산출대상이 되며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내역서 중 노무비 내역으로 하며, 산출이 어렵거나, 제출이 곤란할 경우 *계약금액(VAT제외)에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함.
- ※계약금액(VAT제외):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으로 적용함.
- ※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적용기간 2008. 1. 1-2008. 12. 31)일반건설공사인 경우 28% 적용 / 하도급공사인 경우 34% 적용
- ○연간포괄 계약
- : 전체근로자의 연간포괄 총예정 인건비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내역이 산출대상이며, 사무직 인건비 산출은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에서 임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하여 산출하고, 현장직인건비 산출은 공사원가명세서의 급여, 상여금, 잡급을 포함(퇴직급여제외)함.
-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공제계약에 반영할 때에는 외주공사비에 노동부가 공시하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현장직 인건비와 합산하여 산출함.
- (2) 기본요율 :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발급시 사업의 종류별로 판매하는 기본적인 요율로 우리조합은 주간사인 동부화재와 업무협정에 의해 책정함(시중보험사 보험요율의 약 90% 수준)

- (3) 보상한도인상계수 : 1회의 사고발생으로 지급될 수 있는 1인당 · 1사고당 설정된 공제료의 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인상계수로 보상한도액에 따라 1에서부터 4.31까지 적용됨.
- O보상한도 인상계수

1인당 1사고당	10	20	30	50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0	1.00													
20	1.15	1.60												
30	1.26	1.71	1.97											
50	1.41	1.85	2.10	2.33										
80	1.54	1.96	2.20	2.41	2.51									
100	1.67	2.07	2.30	2.51	2.62	2.67								
150	1.82	2.20	2.43	2.63	2.75	2.80	2.88							
200	1.97	2.33	2.55	2.75	2.88	2.93	3.01	3.26						
250	2.11	2.46	2.67	2.87	3.00	3.05	3.13	3.35	3.37					
300	2.24	2.58	2.78	2.98	3.11	3.16	3.24	3.43	3.46	3.63				
400	2.41	2.72	2.91	3.09	3.21	3.26	3.33	3.51	3.54	3.69	3.71	3.83		
500	2.57	2.86	3.03	3.20	3.31	3.36	3.42	3.59	3.62	3.74	3.77	3.89	4.01	4.11
1,000	2.98	3.21	3.34	3.48	3.59	3.61	3.65	3.81	3.83	3.92	3.95	4.08	4.20	4.31

- (4) 조정계수: 계약자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손해율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시키는 계수로 최저 0.4에서 최고 2.95까지 적용됨.
- ※원도급공사인 경우 조정계수는 공제계약자의 손해율을 적용하고, 하도급공사인 경우 조정계수는 원수급인(원도급자)의 손해율을 적용함. 또한 연간포괄계약인 경우 조정계수는 공제계약자의 손해율을 적용함.
- ※보상한도인상계수 및 조정계수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적용하고 있음.

(5) 기타요윸

- ○단기요율: 연간포괄계약 체결시 1년이하 기준으로 계약시 적용하는 요율로 활용되며, 공제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시 공제료환불에 사용하는 요율임.
- ○개별할인·할증율: 보험사에서 산출하는 공제료가 50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할인율로 사업의 종류별에 따라 최고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할증율은 적용하지 않음.
- ○추가할인율: 아래와 같이 추가할인을 적용하며, 추가할인의 총합은 6%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할 인 율	비고
계속계약할인	5%	갱신계약에 적용(연간포괄계약)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2%	손해보험사 단체보험료 1천만원 이상의 고액
고액계약할인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 4%	계약에 차등적용
	1억원 이상 : 6%	
연간포괄	E0/	공제기간 1년기준 연간포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할인	5%	중세기선 1년기군 한산포월계약을 제일이는 경구

○공제료 분할납입 특약요율

연간포괄계약에 의해 산출된 공제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입을 할 수 있음

납입회수	할증계수	납 입 방 법
2회납	1.02	할증계수를 적용한 공제료를 납입회
4회납	1.03	수 및 비율에 따라 분할납입

2회 분납-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60%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40%해당액)

4회 분납-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공제료의 35%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2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3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제4회: 청약일후 8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자. 공제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7 8	여기교기이	공사장별 계약			
구 분	연간포괄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필요서류	①임금산출자료(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 ②산재보험보험료 보고서사본	① (하)도급 계약서 ② 공사비내역서(노무비 확인)			
노무비 적용방법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상여금,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를 인건비로 책정함. (인건비에는 임원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담금은 제외하고 직접+간접 노무비에 잡급과 상여금 합산)하도급업체까지 담보할 경우 외주공사비의 34%를 노무비에 합산	공사비내역서상의 인건비, 노무비는 직접+간접 노무비로 책정함. 단, 공사비내역서 미기재시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VAT제외)의 28%, 하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34%를 노무비로 책정(노동부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조정계수 적용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의 조정계수 적용	원수급인의 조정계수 적용		
피공제자 입력방법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차. 사업의 종류[예시표]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40001 건축건설공사	○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 급수, 급탕, 안전, 소화 등의 설비공사 ○ 도장 공사 및 시멘트취부 방수공사 ○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가스설비, 공조시설, 공해방지 시설, 닥트, 배관설비, 자동제어, 태양열 설비, 펌프실, 환기장치, 냉각탑 보수, 분수대 설비, FRP, 보일러, 주방공사 등)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 고량건설공사(개보수공사, 선창의 건설공사					
40002 도로신설공사	○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 - 도로구조물공사, 교각 설치공사, 강교설치공사					
40003 기계장치공사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 및 부대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기계대 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운반기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학력 및 원자력발전시설, 변전소의 설치공사 및 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또는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포함)의설치, 이전, 철거공사 - 주차설비(관제시스템)공사 - 주차설비(관제시스템)공사 - 주차설비(관제시스템)공사 - 공장내 기계설치 공사					
40101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방파제, 암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40102 수력발전시설 시설신설공사	O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					
40103 터널신설공사	○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 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4020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공사)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40202 고가 및 지하 철도신설공사	○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 복구공사 포함) ※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40004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개수,복구공사) - 옹벽축조의 공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및 철거공사 - 하천의 제방도로, 제방수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 - 호반, 하천, 해면의 준설, 간척,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항지벽 건설공사 - 호탐,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 건설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 우저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22300 기계기구제조업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원동기, 농업용 기계기구, 특수산업용 기계기구, 금속가공기계, 건설기계산기계, 설비품, 섬유기계,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 기계기구, 일반산업용 기계기구,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					
90601 각급사무소	○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 ○ 각종 도매, 소매업을 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업종					

카. 근로자재해 공제약관 중 중요한 사항

○ 공제약관 중 약관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한 번이상은 읽어보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제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의 손해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조합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제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 합니다.
- 2. 피공제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약관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약관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3.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4. 위 1, 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기타 계약후 알릴 의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시 상담 및 분쟁 조정

동부화재 콜센터: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0 동부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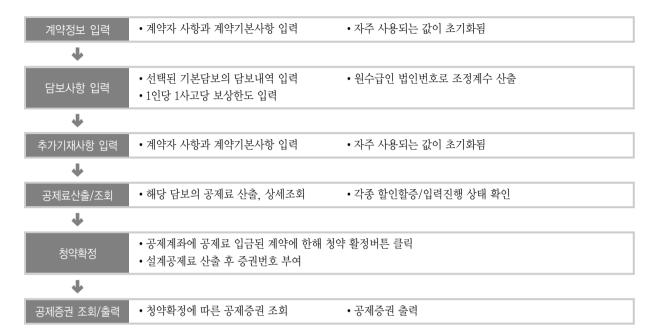
타 공제계약시 주의사항

- 1. 공제계약청약시 공제계약자의 법인인감,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하셔야함.(인터넷 공제청약시 제외)
- 2. 사업의 종류는 기본요율 산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의 종류 예시표를 참고하여 산정하셔야 함.
- 3. 공제계약시 공제기간 산정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만 소급하여 산정할 수 있음. [공제계약자의 무사고확인원 징구(fax징구 후 보완가능)]
 -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동부화재에서 인수 검토 후 청약할 수 있음.
- 4. 공제기간산정은 연간포괄계약인 경우 초일불산입으로 청약일 24시부터 개시되며 공제기간종료일 24시까지로 하고, 공사장별계약인 경우는 착공일(또는 청약일) 24시부터 준공일 24시까지로 함.(단 착공일이 선일자인 경우 공제기간 개시일을 선일자 전날로 할 수 있음)
- 5. 타보험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변경계약에 대한 조합발급은 불가함.(조합에서 발급분은 신규발급분에 한해 가능)
- 6. 공사장별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서상에 준공기일이 30일연장이나 60일연장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기간종료일에 맞춰서 기간산정을 함.
- 7. 공제료 분할납입업체는 기일 준수하여 납부하셔야 함.
- 8. 공사명란은 최고 29자정도 입력이 가능하고, 공사명이 29자 이상인 경우는 추가기재사항란에 추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함.
- 9. 추가기재사항란은 공제계약자가 아래 2가지 사항 중 요구하는 경우 입력 가능함.
 - 1) 원수급업체(도급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 2) 하도급공사인 경우 원수급인을 공동피공제자로 요구하는 경우
- 10. 공사장별계약시 도급(하도급) 계약서상 노무비(인건비)내역이 없을 경우 인건비(노무비)산정은 공사도급 (하)계약서상의 계약금액(VAT제외)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로 적용함.

2. 근로자재해공제 전산메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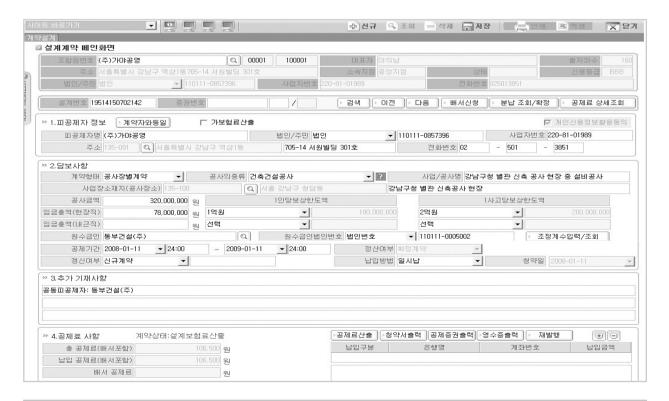
근로자재해공제의 업무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설계흐름 |



전체화면보기

근로자 재해공제의 설계 메인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홈페이지(www.seolbi,com) 사이버지점 공제사업에 들어오시면 설계계약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공인인 증이 요구됩니다)
- ○전체화면은 조합원정보/피공제자정보/담보사항/추가기재사항/공제료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O근로자재해공제 화면의 자주 사용되는 화면의 값은 초기화하여 선택 시 간단히 설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계약정보 |



- 공제계약자는 계약정보 화면에서는 신규버튼을 누르시고, 피공제자 사항과 계약 기본사항들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단, 청약을 원하는 조합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활용 동의란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O '계약자와 동일 버튼'을 클릭하면 피공제자명, 법인/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셋팅됩니다. (계약자, 피공제자의 수정을 원하면 임의로 수정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O 조합원이 계약정보 사항을 입력 하지 않고서도 '가보험료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설계공제료를 산출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담보사항 |



O 공사의 종류: 해당위험을 공사의 종류구분에서 선택합니다.(단, 여러 업종을 영위 하는 조합원인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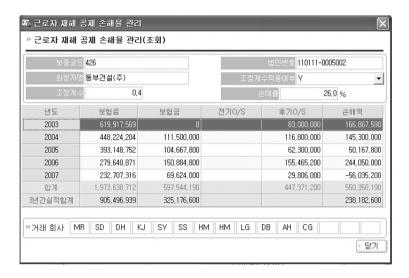
- O 사업/공사명 : 해당 공사명을 입력합니다.(최대29자이므로 초과시 추가기재사 항란에 입력 가능합니다.)
- O 사업장 소재지(공사장소): 해당공사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단, 전 사업 장을 담보하는 기간보험의 경우 우편번호에 999-999를 입력하면 전국일원으로 소재지가 입력됨)
- O 공사 금액: 건설공사에 있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VAT포함)을 입력합니다.
- O 임금 총액: 해당공사의 임금총액을 현장직, 사무직(내근직) 별로 입력합니다.
- ▷ 건설공사 등의 사업인 경우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으로 합니다.
- ▷ 공사장별 계약일 경우 현장직 임금만 입력되고, 사무직(내근직) 임금은 입력될 수 없게 제한됩니다.
- ▷ 연간포괄 계약일 경우 현장직 임금과 더불어 사무직(내근직) 임금도 입력이 가능하며, 사무직 임금을 입력할 경우 공사의 종류는 각급 사무소로 자동으로 적용되고, 공제료도 산출되게 됩니다.
- O 보상한도: 1인당, 1사고당 보상한도를 현장직, 사무직 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단. 1사고당 보상한도는 1인당 보상한도금액보다 크거나 같아야함)
- ▷ 기본보상한도액: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 ▷ 1인당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입력 (Combo: 5천만원, 1억, 2억, 3억, 5억, 10억원)
- ▷ 상기 콤보에 없는 보상 금액은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5천만원 단위로 끊어 입력합니다.(예, 1인당 2억5천만 원, 1사고당 7억원 등)
- ▷ 상기 콤보에 없는 보상 금액은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5천만원 단위로 끊어 입력합니다.(예, 1인당 2억5천만 원, 1사고당 7억원 등)
- O 원수급인을 입력하여 손해율 조정계수를 적용 받습니다.
- 원수급인 : 도급계약. 연간계약일 경우 공제계약자명. 하도급계약일 경우 원수급업체명을 입력합니다.
- O 원청자 법인번호: 원청자가 개인사업자(주민번호)인지, 법인 사업자(법인번호) 인지 선택하여 해당 주민/법인 번호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 O 공제기간은 기간 계약 일 경우 공제시기로부터 1년, 구간계약 일 경우 해당 공사기간을 입력합니다.(공제시기. 종기 시간은 24시로 셋팅됨)
- 계약형태 입력

▷연간포괄계약: 공제기간이 1년으로 전 사업장을 연간으로 가입하는 계약 ▷공사장별계약: 건설공사 등에 있어 특정 현장별로 공제가입하는 계약 (40001) 건축건설공사

(40002)도로산설공사
(40003)기계장치공사
(40004)기타건설공사
(40010)한전발주전기공사
(40101)[편통 신설공사
(40102)수력발전시설공사
(40103)터널신설공사
(40201)철도 궤도 산설공사
(40202)고가 및 지하철도 공사
(22300) 기계기구제조업

공사의 종류 콤보 클릭시 사업 예시표를 참고

- 계약형태에서 연간포괄계약을 입력하면 정산여부는 정산, 공사장별 계약을 입력하면 정산여부는 확정으로 자동 선택 입력됩니다.
- O 납입방법을 선택합니다.(공사장별계약은 일시납, 연간포괄계약 중 공제료 1백만원 초과인 건은 2 또는 4분납 선택 가능)
- O청약일은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보여줍니다
- O 조정계수 입력/ 조회 화면:



O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에 적용되는 업체를 선택하여 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조회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업체명을 원수급인 사항에 입력 후 조회하여 '조정계수 입력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업체의 손해율 관리 화면이 DISPLAY 됩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

- 사업(특히 건설공사 등의 경우)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는 원수급인의 과거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하며, 동 계약상의 하수급인의 실적은 원수급인의 손해율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 단, 건설공사 등에 있어 원수급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도급비율이 큰 업체의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이의 확인 이 어려울 경우는 계약자별로 조정계수 산출시 기초가 된 공제료 실적이 큰 원수급인의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 공제기간 1년 기준으로 전 공사금액을 포괄하여 계약하는 연간계약인 때는 계약자별로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추가 기재사항│



- O 계약정보와 담보사항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 기재 정보를 입력함.
- 1. 하도급계약인 경우 해당 원수급업체를 공동피공제자로 입력 가능
- 2. 도급업체가 다수인 경우 해당 도급업체 입력 가능
- 3.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부보하는 경우 공동피공제자로 추가 입력 가능

│공제료 사항│



- O계약 설계를 마치고 공제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O공제료산출 버튼: 공제료 산출을 위한 제반 요소들의 입력이 끝나고 최종 공제료 산출시 또는 설계 내용 수정 후 공제료 재산출시 클릭하면 설계공제료가 (재)산출 됩니다.
- O공제료가 산출되고 조합으로 신청하실려면 '입금' 버튼을 누르시고 추가적인 지시사항대로 처리하시면 조합으로 신청이 됩니다.
- 공제료 결재는 금융결재원 PG로 결제하는 방법과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확정에 따른 공제증권 출력



- ○청약확정에 따른 공제증권을 출력은 공제계약조회 설계/계약명세조회화면에서 구분을 계약으로 하고 조회하시면 청약확정된 계약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O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설계계약메인화면으로 청약확정된 계약내용이 나옵니다.
- O메인화면 하단에 청약서출력, 공제증권 출력, 영수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연장 또는 노무비 증가, 보상한도 변경, 각종 기재사항 변경 같은 배서청약사항 또한 위 사항과 동일 한 방법으로 배서청약서, 배서공제 증권, 배서계약(원계약 공제증권양식에 배서된 내용이 반영된 증권) 출력하시면 됩니다. ②